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국유재산특별제한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상목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, 무상 양여,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제6조제3항”을 “제5조”로 한다.

제3조의2, 제3조의3,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자료요청)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 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의3(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기관)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국유재산특례 평가와 관련한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
3. 그 밖에 국유재산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·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

제3조의4(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평가)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.

1. 입법목적 달성도, 특례활용 계획 및 실적 등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
2. 정부정책 및 법령상 특례의 필요성,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 등 국유재산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
3. 국유재산특례의 존치여부에 관한 종합의견 및 정책제언

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이 만료 되는 해당 연도의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관 국유재산특례의 존치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치평가를 5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
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존치평가의 결과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12조제1항”을 “제1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국유재산특례 신설 · 변경 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) ① (생 략)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은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기준 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2조(국유재산특례 신설 · 변경 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제5조----- ----- ----- ----. <u>제3조의2(자료요청) 법 제7조제4 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을 요 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 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 다. 다만, 그 기간 내에 자료 등 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 <u>제3조의3(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 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기관) 기 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국유재</u>
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산특례 평가와 관련한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
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

3. 그 밖에 국유재산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·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

제3조의4(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평가)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.

1. 입법목적 달성도, 특례활용 계획 및 실적 등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

2. 정부정책 및 법령상 특례의 필요성,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 등 국유재산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

3. 국유재산특례의 존치여부에

<u><신 설></u>	<u>관한 종합의견 및 정책제언</u> ② <u>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 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이 만료 되는 해당 연도의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관 국유재산특례의 존치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<u>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치평가를 5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④ <u>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존치평가의 결과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<u>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</u>
제5조(권한의 위임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·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	제5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제13조제1항----- ----- -----

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
청장에게 위임한다.

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254